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 선고 2020가합507996 판결 [주식매매대금청구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나204077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 선고 2020가합507996 판결

전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

담당변호사 전효철

피 고 A

변론종결 2021. 7. 2.

판결선고 2021. 10. 1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8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4.7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가 부담하고, 50%는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8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4.7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2014. 8. 4. 주식회사 B(이하 'B'라 한다)와 B가 발행하는 우선주 2만 주(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 한다)를 주당 5만 원 합계 1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B에 인수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.

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B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.

나. 이 사건 계약 제27조는 원고의 계약해지권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,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27조(계약의 해지 및 주식매수청구)

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기업(B) 및 이해관계인(피고)이 원고로부터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8. 투자기업에게 C연합회의 '신용정보관리규약'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이해관계인(피고)에게 다음의 각 호를 합산한 금액 이상으로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고, 이해관계인(피고)은 그 요구

에 응하여야 한다.

1. 본 계약서상의 주식인수금액

2.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 복리 4.77%를 적용하여 계산

한 금액에서 기수입된 배당금누계액을 차감한 금액

다. 2016. 3. 2. B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1항 제8호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자, 원고는 같은 해 3. 8. B와 피고에게 2주 이내에 위 해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을 알린 후, 같은 해 5. 23.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하였고, 위 통지는 그 다음날인 24. 피고에게 도달하였다.

라. B가 2017. 4. 7.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10호로 신청한 회생절차가 같은 해 5. 12. 개시된 후 2018. 11. 9. 회생계획(이하 ‘이 사건 회생계획’이라 한다)이 인가되었고, B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 발행된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하여 액면가 주식 2주를 주식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시켰다.

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B가 발행한 우선주 40만 주 전부를 소유한 원고의 주식 수도 20만 주로 감소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. 5. 24. 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주식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2항이 정한 주식인수금액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8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4.7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의 채무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에 따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가 감경된 비율로 감경되거나 원고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점을 고려하여 면제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. 5. 24.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이 성립한 후, 2018. 11. 9.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하여 줄 이 사건 주식의 수량도 2만 주에서 1만 주로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주식대금도 이 사건 주식의 수량이 감소한 비율만큼 감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(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주식대금지급의무는 피고의 단독채무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채무는 아니지만, 결과적으로 피고가 자신의 채무감면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식의 수량감소가 발생하였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)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인수대금 10억 원의 50%에 해당하는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2014. 8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4.7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덕식, 판사 명선아, 판사 이유섭